#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09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 박범계·임오경·전용기

이강일 • 백승아 • 채현일

장종태 • 이기헌 • 추미애

송재봉・김태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특허에 기반하여 생산된 제품의 매출에 대한 특례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대여 촉진을 위하여 현행 100분의 25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를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의 매출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조세회피와

혜택 편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등).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을 "기술이전·취득 및 사업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을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 또는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권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 또는 대여받은특허권등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특허권등을 이용하여생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및 매출액의 계산 등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

12조제1항·제3항"을 각각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제3항"을 각각 "제12조제1항·제 3항·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이전·취득 및 사업화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 득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제12조(기술이전ㆍ취득 및 사업 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생 화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② (현행과 같음) 략) ③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 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 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0분의 50----감면한다. <신 설> ④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등 또는 내국 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이전・ 대여받은 특허권등(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 또는 대여받은 특허권등 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생산 한 재화나 용역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함으로써 발생하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과세연도에 특허권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뺀다.

⑤ 제1항부터 <u>제3항</u>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생 략)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2

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벤처기업의 경우에
<u>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u>
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및 매출액의 계산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 정한다.</u>
<u>⑤</u>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
<u>⑥</u>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현행과 같음)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 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 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 1항 · 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 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 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 · 제2항, 제96조, 제96조 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 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 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 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하다.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 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u>제12조제</u>
<u>1항ㆍ제3항ㆍ제4항</u>
3

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 1항 · 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 • 제5항, 제32조제4항, 제 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 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 · 제2항, 제96조, 제96조 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 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 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 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하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

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 조제1항 · 제3항, 제12조의2, 제 31조제4항 • 제5항, 제32조제4 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 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u>제12</u> 조제
<u>1항ㆍ제3항ㆍ제4항</u>
<b>4</b>
<u>제12</u>
조제1항 · 제3항 · 제4항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 의6제1항·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 략)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저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와 같은법제96조

-	
-	
-	
-	
-	
-	
-	
-	
-	
-	
-	
-	
-	<u>.</u>
	1. ~ 3. (현행과 같음)
제.	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①
-	
-	
-	
-	
-	
-	
-	

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 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 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 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 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 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 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 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 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 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 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 4. 제6조, 제7조, <u>제12조제1항·</u> <u>제3항</u>,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 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 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2</u> 조제1항
• 제3항 • 제4항
<u> </u>
,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 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 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 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 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 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 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 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1. ~ 3. (생 략)
- 4. 제6조, 제7조, <u>제12조제1항·</u> <u>제3항</u>, 제12조의2, 제21조, 제 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 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4 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2</u> 조제1항
<u>• 제3항 • 제4항</u>

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 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의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③·④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